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2. 제안이유

- 「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,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(부칙안 제2조)  
(현행) 2015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18년 12월 31일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0조)  
(현행)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 인용 조문  
→ (개정)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인용 조문

#### 4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 도세 감면 사항은 총 12개로 비용 추계결과를 보면 연 6,558백만원의 도세 감면을 예상할 수 있음.

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세 감면이 기존 수준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